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」가 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5. 9. 23. 공포·시행)되는 것에 맞추어,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정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체하면서, 이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9. 3. ~ 9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제3항제11호 중 “방사성폐기물관리”를 “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 및 제14호 중 “방사성폐기물”을 각각 “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957”을 “95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946”을 “944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892”를 “89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)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체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3(원전산업정책국) ① · ② (생 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0. (생 략) 11. <u>방사성폐기물관리</u> 기본계획 의 수립 · 시행 및 관련 연구 개발 12. <u>방사성폐기물</u> 관리시설의 입지 · 건설 · 운영 및 홍보 지 원 13. (생 략) 14. <u>방사성폐기물</u> 관리시설 유 치지역의 지원	제14조의3(원전산업정책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중 · 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</u> <u>리</u> ----- --- 12. <u>중 · 저준위 방사성폐기물</u> - ----- --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중 · 저준위 방사성폐기물</u> - --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(제4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957</u>	<u>955</u>	-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946</u>	<u>944</u>	-2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892</u>	<u>890</u>	-2
·	·	·	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4